

최근 건설업계의 위기상황과 관련 설비건설 업계 하도급대책 긴급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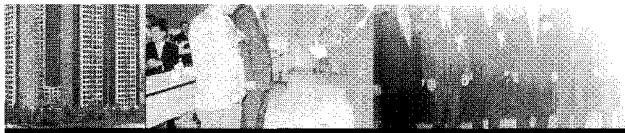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동아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의 퇴출과 현대건설의 위기등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연쇄부도가 예상되는 설비건설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한편 이들 대형 건설업체와 관련된 설비업계의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설비건설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설비건설업체는 주로 원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로부터 냉·난방, 위생, 공조설비 등의 건축설비와 발전소, 정유화학시설, 제철시설 등 기간산업의 산업설비,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환경설비, 반도체공장, 자동차공장 등의 제조설

비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전국에 5,000여 회사가 연간 6조원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30만명의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어려운 작업환경을 극복하며 국가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건설공사 계약제도로 인하여 원도급에 의한 수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IMF 이후 건설물량의 감소로 인한 저가하도급, 공사대금의 장기어음 수령, 이중계약 등으로 설비업계의 경영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동아건설 등 대형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신화건설 등의 청산 사태는 설비건설업계에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



대 수많은 설비업체가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설비건설업계는 인력투입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업종으로서 일반건설 원도급자의 도산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수십만 현장근로자 및 가족들의 생계위협 등 사회적 인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정부의 부실건설업체 구조개혁 퇴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건설 하도급대금으로 발생한 진성어음 및 기성 미수령금액에 대한 조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조치 △퇴출 건설업체가 도급,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연대보증사 승계시공의 경우 협력업체도 승계시공토록 하는 등 설비건설업계의 활로를 마련해 줄 것을 긴급 건의하고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선 원도급자의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서라도 하도급대금진성어음을 최우선 해결해 줄 것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선 것은 대우사태와 현대건설의 위기, 동아건설의 부도등 11개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사태로 전문건설 협력업체들이 대거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려 있어 국가건설산업 전체가 붕괴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IMF 사태로 인해 일반 대형건설업체 52개사가 도산하면서 설비건설업계의 491개사가 연쇄도산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었으나 최근 건설업계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전망이다여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연쇄부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의례적으로 금융지원등 대책을 발표해 왔으나 금융기관만 혜택이 있을 뿐 전문건설업계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사실 일반건설업체들의 부도는 전문건설업체들

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가 일반건설업체들의 회사가 크다는 이유로 살리려 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도는 경영진 구속은 물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여기에 종사한 건설 근로자 가족들의 피해는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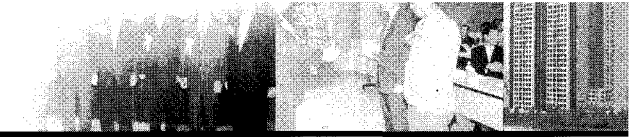
원도급업체의 도산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마저 일반건설업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등급업체에 대한 보증면제 조항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호지급보증제를 법제화해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체의 부도가 발생하면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하도급자인 설비건설업체의 부도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원도급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도급법령의 단서조항을 통해 재무구조가 견실하여 부도위험이 전혀 없다고 판정한 우량업체(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등급)에 대해 공제조합 책임하에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 142개사이던 A등급업체가 올해는 562개사로 늘어나는 등 방만한 신용평가로 신뢰성이 적은데다, A등급 업체인 한보, 청구, 한라, 나산건설 등 17개사가 이미 부도처리 됐으며 최근의 동아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도 A등급에 속하는 등 제도상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등급이 아닌 일반건설업체들은 원도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주지 않는 반면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까지 세우게 하는 등 2중 3중으로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들의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주난에 허덕이는 설비업체들은 공사수주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정당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반면 원도급자인 대형건설업체들은 중소전문건설업체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를 당할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전액을 청구, 오히려 이익까지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협회가 정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하도급 대금으로 발생한 진성어음 및 기성 미수령금액에 대한 조치

동아건설등 퇴출대상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으로 발행한 진성어음과 공사기성고 중 미수령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서라도 여타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도급대금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동아건설과 같이 주채권은행(서울은행)에서 해당기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하도급 대금을 결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조치

동아건설 등 퇴출대상 건설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승계시공 조치

동아건설등 퇴출대상 건설업체로부터 도급, 시공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조치하여 줄 것과 퇴출대상업체의 연대보증회사가 승계, 시공하는 경우 퇴출대상업체의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승계,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시행 제도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를 원도급자의 부도와 관계없이 의무 시행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법제화 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하도급대금지급직접지급제도는 저가수주공사 및 원도급업체의 부도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서 발주자의 임의 선택사항이므로 미이행시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원도급업체 부도시 하도급대금지급직접지급액은 발주자가 원도급업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의 채권권리행사 우선순위가 타 채권자와 동일하여 피해를 면제받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공사의 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 승인한 사항이므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하는 제도로 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확대 시행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모든 공사(민간부분 발주공사 포함)의 경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정착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일반건설업자의 보증서 발급(건설공제조합) 시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의 제한이 있음은 물론 원도급자 자체도 보증서 발급 기피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을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A등급업체로 한정토록 고시하였으나 한보, 청구, 나산건설 등과 같이 보증서 발급면제대상 업체의 부도 발생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아직도 존속되므로써 많은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모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원도급자의 부도시 하도급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